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09.07.1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.06.12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9.06.16.
- 다. 상정일자 : 제146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위원회(2009.07.06)
제146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위원회(2009.07.13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- 제안설명자 : 조 병 준 치수방재과장

가. 제안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. “방재단”은 단장 1인, 부단장 1인,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함.
- 2). “방재단”은 자연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등 재난관련 전문야에 활동하며,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.
- 3). “방재단”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함.
- 4).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구청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.
- 5).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이나 영리목적과 정치활동 등 소송이나 단체의 쟁의에 참석하는 행위와 방재단에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.
- 6).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함.
- 7).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함.

3. 경토보고 (신승관 전문위원)

본 제정 조례안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등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,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“지역자율방재단 추진지침 및 표준 조례안”이 2007년 3월 6일 시달되었고,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강화방안”이 2008년 2월 13일,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“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강화방안 마련 촉구” 공문이 2009년 3월 12일 각각 시달됨에

따라 우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, 조례 제정후 방재단이 원만하게 구성되고,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방재단 구성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며,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판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수정안 별첨